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354

제출일자 : 2005. 9. 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승진적체가 심한 일반직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이 개정(2004. 9.24. 공포. 행정자치부령 제253호)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직급을 조정하고

○ 최근 생계형 사건·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우리시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“1,244명”에서 9명을 증원한 “1,253명”으로 하고, 그 중 6급은 247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264명으로 하며, 7급은 317명에서 12명을 감원하여 305명으로 하고, 8급은 242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244명으로 하며, 9급은 144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46명으로 하고자 함(안 제2조 및 별표).

남양주시조례 제 호

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중 “1,244명”을 “1,253명”으로 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) 남양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,244명이며,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)----------1,253명----------.

[별 표]

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(정원관리기관별) 정원표(제2조 관련)

구 분	총 계	의회사무국	본 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**1,253**	**20**	**613**	**119**	**164**	**337**
정무직 계	**1**		**1**			
정무직(시장)	1		1			
일반직 계	**1,018**	**13**	**510**	**70**	**113**	**312**
3급	1		1			
4급	8	1	5	1	1	
5급	50	2	24	3	6	15
6급	264	4	145	16	26	73
7급	305	5	148	13	40	99
8급	244	1	128	27	27	61
9급	146		59	10	13	64
기능직 계	**187**	**7**	**96**	**9**	**50**	**25**
6급	6		3		3	
7급	17		9		8	
8급	28	1	10	3	14	
9급	39	4	26	1	5	3
10급	97	2	48	5	20	22
연구직 계	**1**		**1**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1		1			
지도직 계	**35**			**35**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32			32		
별정직 계	**11**		**5**	**5**	**1**	
5급 상당						
6급 상당	4			4		
7급 상당	5		3	1	1	
8급 상당	2		2			
9급 상당			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[별 표]

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(정원관리기관별) 정원표(제2조 관련)

구 분	총 계	의회사무국	본 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1,244	20	609	119	164	332
정무직 계	1		1			
정무직(시장)	1		1			
일반직 계	1,009	13	506	70	113	307
3급	1		1			
4급	8	1	5	1	1	
5급	50	2	24	3	6	15
6급	247	4	134	13	23	73
7급	317	5	155	15	44	98
8급	242	1	129	27	26	59
9급	144		58	11	13	62
기능직 계	187	7	96	9	50	25
6급	6		3		3	
7급	17		9		8	
8급	28	1	10	3	14	
9급	39	4	26	1	5	3
10급	97	2	48	5	20	22
연구직 계	1		1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1		1			
지도직 계	35			35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32			32		
별정직 계	11		5	5	1	
5급 상당						
6급 상당	4			4		
7급 상당	5		3	1	1	
8급 상당	2		2			
9급 상당						

개 정 안

[별 표]

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(정원관리기관별) 정원표(제2조 관련)

구 분	총 계	의회사무국	본 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1,253	20	613	119	164	337
정무직 계	1		1			
정무직(시장)	1		1			
일반직 계	1,018	13	510	70	113	312
3급	1		1			
4급	8	1	5	1	1	
5급	50	2	24	3	6	15
6급	264	4	145	16	26	73
7급	305	5	148	13	40	99
8급	244	1	128	27	27	61
9급	146		59	10	13	64
기능직 계	187	7	96	9	50	25
6급	6		3		3	
7급	17		9		8	
8급	28	1	10	3	14	
9급	39	4	25	1	5	3
10급	97	2	48	5	20	22
연구직 계	1		1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1		1			
지도직 계	35			35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32			32		
별정직 계	11		5	5	1	
5급 상당						
6급 상당	4			4		
7급 상당	5		3	1	1	
8급 상당	2		2			
9급 상당						

비용소요추계서

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2조(별표)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구 분	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현 행	1009	1	8	50	247	317	242	144
개 정	1018	1	8	50	264	305	244	146
증·감	+9				+17	-12	+2	+2

※ 정무직(1명), 기능직(187명), 연구직(1명), 지도직(35명) 및 별정직(11명) 변동 없음

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총 계	304,195	"붙 임"
○ 인 건 비	270,189	
- 기본급(기말수당포함)	153,557	
- 수 당	44,885	
- 정액급식비	14,040	
- 교통보조비	13,320	
- 명절휴가비	14,396	
- 가계지원비	23,993	
- 연가보상비	5,998	
- 기타직보수	-	
- 일용인부임	-	
○ 물 건 비	13,185	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	-	
- 부서운영업무추진비	-	
- 정원가산업무추진비	405	
- 직책급업무추진비	-	
- 직급보조비	12,780	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	-	
○ 이전경비	20,821	
- 성과상여금	4,258	
- 연금부담금	13,052	
- 국민건강보험금	3,232	
- 연금지급금	279	

(붙 임)

세 부 산 출 내 역

<인 건 비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총 계	304,195	
○ 인 건 비 계	270,189	
- 기본급	153,557	(봉 급) • 6급 : 1,750,600원 × 1명 × 12월 = 21,007,200원 • 7급 : 1,376,800원 × 2명 × 12월 = 33,043,200원 • 8급 : 981,000원 × 3명 × 12월 = 35,316,000원 • 9급 : 716,700원 × 3명 × 12월 = 25,801,200원 (기말수당) • 기말:9,597,300원 × 50% × 4월 = 19,194,600원 • 정근:9,597,300원 ×100% × 2월 = 19,194,600원
- 수 당	44,885	(가족수당) • 배우자: 30,000원× 9명×0.78×12월 = 2,527,200원 • 가 족: 20,000원× 9명×1.48×12월 = 3,196,800원 (자녀학비보조수당) • 중 학 교: 46,500원×9명×0.19×4회 = 318,060원 • 고등학교:261,450원×9명×0.16×4회 =1,505,950원 (초과근무수당) • 6급 : 7,711원×1명×50시간×12월 = 4,626,600원 • 7급 : 6,919원×2명×50시간×12월 = 8,302,800원 • 8급 : 6,200원×3명×50시간×12월 = 11,160,000원 • 9급 : 5,560원×3명×50시간×12월 = 10,008,000원 (사회복지업무수당) • 30,000원×9명×12월 = 3,240,000원

구 분 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- 정액급식비	14,040	일반직 : 130,000원× 9명×12월 = 14,040,000원
- 교통보조비	13,320	• 6~7급 : 130,000원×3명×12월 = 4,680,000원 • 8급이하: 120,000원×6명×12월 = 8,640,000원
- 명절휴가비	14,396	일반직 : 9,597,300원×75%×2월 = 14,395,950원
- 가계지원비	23,993	일반직 : 9,597,300원×50%×5월 = 23,993,250원
- 연가보상비	5,998	일반직 : 9,597,300원×1/24×15일 = 5,998,310원
- 기타직보수	-	
- 일용인부임	-	

<물 건 비>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○ 물 건 비 계	13,185	-
-기관운영업무추진비	-	-
-부서운영업무추진비	-	-
-정원가산업무추진비	405	45,000원 × 9명 = 405,000원
-직책급업무추진비	-	-
-직급보조비	12,780	• 6 급 : 155,000원× 1명×12월 = 1,860,000원 • 7 급 : 140,000원× 2명×12월 = 3,360,000원 • 8 급 : 105,000원× 6명×12월 = 7,560,000원 이하
-특정업무수행활동비	-	-

<이전경비>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○ 이전경비 계	20,821	
- 성과상여금	4,258	• 6급(B등급) : 1,635,500원 × 40% × 1명 = 654,200원 • 7급(B등급) : 1,376,800원× 40% × 2명 = 1,101,440원 • 8급(B등급) : 1,134,700원× 40% × 3명 = 1,361,640원 • 9급(B등급) : 951,000원 × 40% × 3명 = 1,141,200원
- 연금부담금	13,052	153,556,800원 × 8.5/100 = 13,052,328원
- 국민건강보험금	3,232	153,556,800원 × 2.105/100 = 3,232,370원
- 연금지급금	279	153,556,800원 × 0.182/100 = 279,473원